

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82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3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6월 16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아동그룹홈 활성화 및 그룹홈 간 협력·연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「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기관으로서,
- 아동그룹홈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

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
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인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아동 입소·퇴소·상담·조사·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업무는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

※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,
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
재위탁에 해당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8조에 규정된 사항

-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아동 입소·퇴소·상담조사·사후관리업무 등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중구 을지로18길 5, 무광빌딩 6층
- 개소일자 : 2012. 12. 1.
- 이용대상 : 아동그룹홈 종사자 및 아동
- 지원시설 : 사무실, 회의실, 상담실 등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 12. 1. ~ 2023. 11. 30.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67백만원('20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314백만원, 사업비 48백만원, 운영비 5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제11조

제8조(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,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11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, 2014.5.14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정태영(☎ 2133-5186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¹⁾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²⁾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
 - 그룹홈 아동 입소, 퇴소, 상담, 조사,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<개정 2019. 3. 28.>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지원업무

-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·지원업무
 -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
 -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
 -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 -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
 -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
 - 기타 시책 추진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
-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, 전문성 및 서비스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, 이에 대안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는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서울시에 설치된 그룹홈간의 협력,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³⁾에 따라 설치·운

3) 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,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
1.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
2. 그룹홈 아동 입소, 퇴소, 상담, 조사,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
3.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
4.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
5.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

영되는 시설임.

- 센터의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, 동 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하로 종합성과평가 비대상⁴⁾에 해당하며 2019년 추진 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.

<아동공동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>

소재지	면적(m ²)	연간사업비 (백만원)	위탁기간	운영주체
중구 을지로18길 5, 무광빌딩 6층	108	367	'17.12.1~ 20.11.30.(3년)	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 협의회 (대표 방영탁)

(단위 : 명)

계	센터장	팀 장	직 원	자립전담요원
7	1	1	3	2

6.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
7.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8.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

9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

4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10조(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)

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<민간위탁 추진 현황>

회차	위탁기간	선정방식	위탁기관
1 (최초)	'12.12.01.~'15.11.30.(3년)	신규위탁 (공모)	(사)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
2	'15.12.01.~'17.11.30.(2년)	재계약	(사)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
3	'17.12.01.~'20.11.30.(3년)	재위탁 (공모)	(사)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⁵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⁶⁾에 따라 시장의 명의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아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6) 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,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
1.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
2. 그룹홈 아동 입소, 퇴소, 상담, 조사,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
3.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
4.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
5.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

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.

-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7)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- 보호필요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서울시에 설치된 그룹홈 간의 협력,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1조8)에서 조례에 따른 이미 시장의 사무인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6.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
7.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8.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

9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

7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8) 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1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.

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
3 종합 검토 의견

- 동 위탁 사무는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과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필요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의 입소, 퇴소, 상담, 조사,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, 종사자를 위한 교육, 개별 공동 생활가정 및 아동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.
- 이에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.
 - 한편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그 필수요건인 시설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특성 상 센터차원의 지원이 요구되었음에도, 센터가 다소 소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점은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의 한계와 동시에 개선 필요성이 노출된 것으로 향후 센터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<붙임자료>

□ 2019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세부 사업실적

사업영역			사업내용
항	목	세목	사업실적
그룹홈 공공성 강화	그룹홈 운영지원	그룹홈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■ 사업내용 : 신규, 이전 그룹홈 방문 및 운영 관련 컨설팅 ■ 사업실적 : 그룹홈 8개소
		지자체 방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이 위치한 자치구 ■ 사업내용 : 자치구 방문을 통한 센터 홍보 및 협력 관계 구축 ■ 사업실적 : 4개구
		그룹홈 인력파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3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■ 사업내용 : 가사도우미(취사원) 파견(노인일자리사업) ■ 사업실적 : 26개 기관/ 30명 파견
	그룹홈 정책지원	아동복지 거버넌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내용 : 서울시 민간복지거버넌스 아동분과 활동 ■ 사업실적 : 8회
		그룹홈 현황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3.~10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■ 사업내용 : 그룹홈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■ 사업실적 : 1회
		자료개발 및 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센터, 서울시 그룹홈 ■ 사업내용 : 사업보고서, 동영상, 교육자료 개발 및 발간 ■ 사업실적 : 5회
그룹홈 공공성 강화	그룹홈 발전지원	성과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및 유관기관 ■ 사업내용 : 센터의 운영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 ■ 사업실적 : 1회
		서비스 품질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10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종사자 ■ 사업내용 : 그룹홈 욕구조사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■ 사업실적 : 1회
		지원센터 발전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지원센터 ■ 사업내용 : 센터 사업평가 워크숍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, 서울시 대학-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(1~3월) ■ 사업실적 : 7회
		지원센터 역량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지원센터 ■ 사업내용 : 내부 직원 교육비 지원 및 역량강화 세미나 ■ 사업실적 : 4회
	자원 개발 및 연계	자원 개발 및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■ 사업내용 : 그룹홈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·연계·제공 -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통돌이세탁기 41개 그룹홈 지원

사업영역			사업내용
항	목	세목	사업실적
	홍보 및 네트워크		- 초록우산 책,책자 5개 그룹홈 지원 - KTH 설맞이 문화체험 10개 그룹홈 지원 - 사단법인 굿위드어스 상하목장 카페 41개 그룹홈 지원 - 초록우산 미술관 티켓 27개 그룹홈 지원 - 초록우산 김장김치 57개 그룹홈 지원 - 초록우산 유산균 55개 그룹홈 지원 - KTH 쌀, 삼푸린스, 젤리비타민 20개 그룹홈 지원 ■ 사업실적 : 8회
		뉴스레터 제작배포	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및 유관기관 ■ 사업내용 :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■ 사업실적 : 4회
		홈페이지 운영	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및 유관기관 ■ 사업내용 : 센터 홈페이지 운영(www.seoulcenter.org) ■ 사업실적 : 1회
		기관홍보	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시민, 지역사회, 대학생 등 그룹홈에 관심 있는 일반인 ■ 사업내용 : 기관방문 응대, 센터 홍보활동 ■ 사업실적 : 4회
아동 성장지원	적응지원	아동 정서지원	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■ 사업내용 : 문화체험활동(요리체험) ■ 사업실적 : 2회 ■ 사업인원 : 40명/93명(실인원/연인원)
		가족기능 강화	■ 사업기간 : 2019.05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■ 사업내용 : 그룹홈 가족여행 ■ 사업실적 : 1회 ■ 사업인원 : 26개소/196명
	치료지원	개인매체 치료	■ 사업기간 : 2019.05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아동·청소년 ■ 사업내용 : 찾아가는 개인매체치료 ■ 사업실적 : 145회 ■ 사업인원 : 11명/123명 (실인원/연인원)
		집단매체 치료	■ 사업기간 : 2019.02.~11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아동·청소년, 종사자 ■ 사업내용 : 찾아가는 집단매체치료 ■ 사업실적 : 238회 ■ 사업인원 : 41명/436명 (실인원/연인원)
		입소아동 적응치료	■ 사업기간 : 2019.02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신규입소 아동·청소년 ■ 사업내용 : 아동 종합심리검사 지원 ■ 사업실적 : 1회 ■ 사업인원 : 1명
		아동 긴급지원	■ 사업기간 : 2019.02.~12. ■ 사업대상 : 학대 피해 경험 있는 그룹홈 아동·청소년 ■ 사업내용 : 심리치료 및 상담, 의뢰서비스 지원 ■ 사업실적 : 50회 ■ 사업인원 : 5명

사업영역			사업내용
항	목	세목	사업실적
	자립지원	자립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아동·청소년 ■ 사업내용 : 자립기술교육 ■ 사업실적 : 4회 ■ 사업인원 : 12명/48명(실인원/연인원)
		자립코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7.~11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청소년 ■ 사업내용 : 찾아가는 1대1 진로 코칭 ■ 사업실적 : 100회 ■ 사업인원 : 10명/100명 (실인원/연인원)
아동 성장지원	아동교육	아동 5대 안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2.~03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아동·청소년 ■ 사업내용 : 성폭력 예방 교육 ■ 사업실적 : 6회 ■ 사업인원 : 77명/77명(실인원/연인원)
		아동 5대 안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3.~12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아동·청소년 ■ 사업내용 : 공동생활 성에티켓 교육 ■ 사업실적 : 36회 ■ 사업인원 : 6개 그룹홈
		아동 5대 안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1.~03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아동·청소년 및 종사자 ■ 사업내용 : 약물오남용예방교육 ■ 사업실적 : 2회 ■ 사업인원 : 73명/73명(실인원/연인원)
	SIB 모니터링	SIB 모니터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7.~09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아동·청소년 ■ 사업내용 : 아동인권교육 ■ 사업실적 : 4회 ■ 사업인원 : 87명/87명(실인원/연인원)
종사자 역량강화	종사자 교육	입문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6.~10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(SIB) 참여 아동·청소년·종사자 ■ 사업내용 : 아동인권침해 모니터링 ■ 사업실적 : 1회
		직무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9.~10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신규종사자 ■ 사업내용 : 불안정한 아동·청소년 정서에 대한 감정코칭 ■ 사업실적 : 1회 ■ 사업인원 : 10명/10명(실인원/연인원)
		직무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3.~06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종사자 ■ 사업내용 : 운영지침, 의무교육 ■ 사업실적 : 1회 ■ 사업인원 : 60명/60명(실인원/연인원)
		직무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3.~05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종사자 ■ 사업내용 : 인권교육 ■ 사업실적 : 4회 ■ 사업인원 : 118명/124명(실인원/연인원)
		심화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5.~07.

사업영역			사업내용
항	목	세목	사업실적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종사자 ■ 사업내용 : 아동 양육기술 및 자기 돌봄 교육 ■ 사업실적 : 1회 ■ 사업인원 : 8명
종사자 역량강화	종사자 기능 강화	소진예방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8.~10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종사자 ■ 사업내용 : 체험활동과 명소탐방 ■ 사업실적 : 1회 ■ 사업인원 : 29명/29명(실인원/연인원)
		시설장 워크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8.~10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시설장 ■ 사업내용 : 그룹홈 운영 교육, 네트워킹 등 ■ 사업실적 : 1회 ■ 사업인원 : 36명/36명(실인원/연인원)
		종사자 워크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기간 : 2019.03.~10. ■ 사업대상 : 서울시 그룹홈 종사자 ■ 사업내용 : 에니어그램 워크숍(기본, 심화) ■ 사업실적 : 8회 ■ 사업인원 : 16명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아동그룹홈 활성화 및 그룹홈 간 협력·연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「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기관으로서,

나. 아동그룹홈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인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아동 입소·퇴소·상담·조사·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업무는 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

※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,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항

-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아동 입소·퇴소·상담조사·사후관리업무 등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중구 을지로18길 5, 무광빌딩 6층
- 개소일자 : 2012. 12. 1.
- 이용대상 : 아동그룹홈 종사자 및 아동
- 지원시설 : 사무실, 회의실, 상담실 등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 12. 1. ~ 2023. 11. 30.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67백만원('20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314백만원, 사업비 48백만원, 운영비 5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

제8조(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,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11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정태영(☎ 2133-5186)